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찰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의 「도가니 사건」들을 중심으로 -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찰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의 「도가니 사건」들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경찰연구관 한준섭 · 김지환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II. 지적장애의 정의 및 특성	3
1. 지적장애의 정의	3
2. 지적장애인의 특성	5
III.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발생현황	7
1. 일반적인 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7
2. 최근 5년간 지적장애인 성폭력 발생현황	9
IV. 한국경찰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체계	11
1.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11
가.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11
나. 원스톱지원센터	14
2. 피해자 진술조사	18
가. 지적 장애인 피해자 진술조사 기법	18
1) NICHD 프로토콜 소개	18
2) NICHD 프로토콜 교육 현황	21
3) NICHD 프로토콜 사용 현황 및 한계	22

V. 최근의 4대 도가니 사건 분석 26

- 1. 광주 인화학원 사건(도가니 사건) 26
 - 가. 사건 개요 26
 - 나. 사건의 특징 27
- 2. 천안 인애학교 사건(천안판 도가니) 30
 - 가. 사건 개요 30
 - 나. 사건의 특징 33
- 3. 전주 자립원 사건(전주판 도가니) 34
 - 가. 사건 개요 34
 - 나. 사건의 특징 35
- 4. 제주 영세민아파트 사건(제주판 도가니) 37
 - 가. 사건 개요 37
 - 나. 사건의 특징 38
- 5. 분석 결과 41
 - 가.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42
 - 나. 제3자에 의한 뒤늦은 피해인지 및 수사 착수 42
 - 다. 가해자(피의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 43
 - 라. 다수의 피해자가 장소 불문하고 성폭력에 유린 44
 - 마. 가해자(피의자)의 강력한 부인 및 은폐 노력 45

VI. 경찰 수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 1. 문제점 46
 - 가. 뒤늦은 수사착수로 피해사실 등 입증 곤란 46
 - 나. 현행 아동용 진술조사기법(NICHD) 지적장애인에 적용 곤란 47
 - 다. 비전담 부서의 장애인 성폭력 수사 47

라. 조사관의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경험 부족	48
마. 열악한 근무여건 및 급변하는 조사 환경	49
바. 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기초통계 미흡	49
2. 개선방안	50
가. “도가니 사건化” 원천 차단 위한 선제적 경찰활동 전개	50
나. 지적 장애인 맞춤형 진술조사 프로토콜 개발 필요	50
다. 지방청 특별수사대가 전담수사 확행	51
라. 전담수사관의 관련 전문성 대폭 강화 필요	52
1) 전담수사관에 대한 심화교육 및 평가 반복 실시	52
2) 전담조사관간의 수사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 촉진	53
3)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근무기간 보장	53
4) 관련 전문가 전담조사관으로 특별채용 검토	54
마. 원스톱지원센터 진술조사 환경 개선 및 인력 충원	55
바.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	55
VII. 결 론	57
1. 요약	57
2. 전망 및 한계	59

표 목 차

<표 1> 지적장애의 등급 및 기준	4
<표 2>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5
<표 3>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	8
<표 4>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및 장애인·아동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9
<표 5>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현황 (2013년 3월 현재)	11
<표 6> 성폭력 특별수사대의 직위별 역할	12
<표 7> 장애인 및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 처리절차	15
<표 8> 경찰의 아동 및 장애인 면담조사 프로토콜(NICHD)	20
<표 9> NICHD 진술조사시 유의사항	20
<표 10> 2013년도 NICHD 관련 교육 현황	21
<표 11> 면담조사시 사용되는 질문 유형들	25
<표 12> 시간순에 의한 천안 사건 피의자의 범행일시	32
<표 13> 경찰이 확인한 제주관 도가니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및 일시 ..	38
<표 14> 최근 4대 도가니 사건 비교 및 정리	41
<표 15> 2009년도 전체 및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유형별 현황	44

그 림 목 차

<그림 1>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조직 및 지휘체계도	13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광주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여러 장애인 성폭행 사건 중에서도 가장 발생 비율이 높은¹⁾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그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는 장애유형별로 그 특성이 매우 다르고 조사방법 또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총 15종에 달하는 장애 유형을 포괄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²⁾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찰의 관련 수사 체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의 기존 문헌자료 및 각종 언론기사

1) 전체 장애인 성폭력 발생건수 외에 장애유형별로 집계한 경찰청의 관련 통계가 없어 정확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서울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피해자의 70% 이상이 지적장애여성이라고 한다(김성희 외, 장애유형별 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2, 169쪽.).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대별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3가지가, 신체적 장애는 외부와 내부 신체기능 장애로 다시 나누어지는 가운데 외부 신체기능 장애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6가지, 내부 신체기능 장애에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6가지가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15종의 장애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를 참고하였으며, 광주 도가니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근의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특성 및 경찰 수사 실태를 파악하고자 언론보도를 통해 ‘제2의 도가니’, ‘○○관 도가니’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던 천안, 전주, 제주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광주 도가니 사건과 함께 분석하였다.

직접대면, 전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대상은 총 15명이었는데, 도가니 사건들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던 해당 원스톱지원센터 경찰관 4명, 각 도가니 담당 수사관 4명, 지방청 여청과 근무자 2명, 광주 사건 참여 임상심리전문가 1명, 수도권 원스톱지원센터 근무자 3명, 기타 원스톱센터 장기 근무자 1명 등이 포함된다.

Ⅱ. 지적장애의 정의 및 특성

1. 지적장애의 정의

지적장애의 정의는 기구 및 단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진하며, 지적 능력이 열악하고,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한 증후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³⁾, 이러한 장애가 18세 이전에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 이러한 정의를 적용할 때는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⁵⁾ 이는 실제 지체장애인들의 장애정도를 판단할 때는 지적능력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1. 개인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기능상의 제한성은 그 개인의 동년배 문화에 전형적인 지역사회 및 환경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2. 타당한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감각능력, 운동능력, 행동요인들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3. 개인의 특정 능력에서의 제한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강점도 함께 있을 수 있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김성희 외, 장애유형별 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2, 71쪽), 재인용.

4)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이근후 외 역, 하나의학사(김정혜 외, 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2012, 17쪽), 재인용.

5) 박승희·신현기, 지적장애의 재개념화, 교육과학사, 2003, 12쪽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이란?”, http://seoulidd.or.kr/mentall/mentall_01.php (2013.8.28. 검색)), 재인용.

4. 개인의 제한성을 기술하는 주된 목적은 그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5.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이 장기간 주어지면 지적장애인의 생활 가능성은 향상될 수 있다.

한편, 법적으로 지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해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의 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표 1> 지적장애의 등급 및 기준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낮은 지능지수”와 “일상생활 적응 곤란”이라는 두 특성이 지적장애를 정의하는 데 있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년 12월 현재, 전체 252만 여명의 국내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약 16만 6천여 명으로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으로 약 53%에 이르고 있다. 청각 및 시각장애인은 각각 10% 정도이다.⁶⁾

2. 지적장애인의 특성

기존의 문헌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⁷⁾⁸⁾

<표 2>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동기유발 부족	낮은 실패로 인한 낮은 목표 설정 및 상황 회피 경향
의존적 경향	문제 상황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및 자신의 능력 불신
부정적 자아개념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보유
사회행동적 특성	부족한 대인관계 기술 및 책임감 결여로 주위로부터 거부당함
말과 언어의 지체	음의 대치와 생략 빈번, 구어발달 지연, 제한된 어휘, 정확하지 않은 문법 등 언어지체가 두드러지며 중증의 경우 기본적인 언어소통 곤란
신체적 특성	비장애인과 뚜렷한 신체적, 건강상 차이는 없으나 뇌의 발육 장애로 인해 감각기관 이상을 빈번히 관측할 수 있으며, 대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능력 발달이 비장애아보다 2-4년 지체
학습적 특성	<주의집중 곤란> 짧은 지속시간, 집중 범위 확대 곤란, 선택적 주의집중 어려움
	<중재전략 곤란> 주어진 정보의 조직 및 재구성 능력 부족
	<단기기억 곤란> 일반적으로 장기기억은 보유할 수 있으나, 흐트러진 숫자의 기억과 같은 단기기억 곤란
	<일반화 및 추상화 곤란> 새로운 일에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 적용 곤란 및 추상적 사고능력 제한
	<모방학습 곤란> 관찰이나 모방을 통한 학습 곤란

6) 김성희 외, 장애유형별 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2, 12쪽.

7) 위의 책, 14-15쪽.

8)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이란?”, http://seoulidd.or.kr/mentall/mentall_01.php (2013.8.28. 검색)

위와 같은 개별적 특성들과 별개로, 지적장애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지적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등에 있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공통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⁹⁾ 즉, 타고난 ‘지능지수’ 외에도 교육 여부, 양육 환경, 보호자의 관심, 발육 정도 등의 사회환경적 ‘적응기능’에 따라 실질적인 지적장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이는 곧 공식적 장애등급으로는 지적장애인의 실제 장애정도 및 진술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경우에 따라 현재의 지적능력 및 적응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아예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¹¹⁾도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을 접할 경우에는 개인의 장애 특성에 주목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장애 정도 및 진술 능력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9) 김성희 외, 14쪽.

10) 김정혜 외, 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2012, 20쪽.

11) 후술할 제주도 도가니 사건의 ①피해자가 그러하다.

Ⅲ.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발생현황

1. 일반적인 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장애인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성적 폭력을 의미하며,¹²⁾ 법률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률은 성폭력에 극히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기위해 일반 성폭력법에 비해 장애인 성폭력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¹³⁾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장애인일 경우 간음 행위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관련 처벌법조들은 다음 표와 같다.

12) 김성희 외, 앞의 책, 25쪽.

13) 예를 들어,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강간(성폭력 특례법 제6조)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표 3>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타법개정]	
제8조 (장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최근 5년간 지적장애인 성폭력 발생현황

현재 경찰청은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성폭력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어 지적장애인 성폭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성폭력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통계를 참고하면 간접적으로나 대략적인 발생 건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 상담 피해자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한다.¹⁴⁾¹⁵⁾ 따라서 2012년 656건으로 집계된 경찰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중 70% 수준인 약 460건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최근 5년간 매년 약 200여 건에서 460여건 사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및 장애인·아동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성폭력	발생(건)	15,970	17,242	20,375	21,912	22,935
	증감률(%)		8.0% ↑	18.2% ↑	7.5% ↑	4.7% ↑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건)	228	293	321	494	656
	전체대비(%)	1.4%	1.7%	1.6%	2.3%	2.8%
아동(13세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건)	1,207	1,007	1,179	1,054	1,086
	전체대비(%)	7.6%	5.8%	5.8%	4.8%	4.7%

출처 : 경찰청, 2013

14) 김성희 외, 앞의 책, 169쪽.

15)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가 작년 5월 ‘제13회 성재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장애인성폭력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여성가족부의 총 성폭력 상담 장애인은 12,457명 이었으며 이중 72.8%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서하나,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노출 심각”, 에이블뉴스, 2013. 8. 28.)

한편, 위 표에서 보듯 아동 성폭력이 감소세 내지 정체기에 있는데 반해, 장애인 성폭력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5년 전인 2008년에 비해 무려 188%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성폭력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의 요인을 꼽자면, 우선 전체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 추세가 장애인 성폭력 발생 추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영화 “도가니(2011년 9월 개봉)” 개봉 이후인 2012년의 발생건수가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화의 흥행 및 사회적 인식 제고로 장애인 성폭력 신고 및 처벌이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2011년 말 전격 시행된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¹⁶⁾’는 뒤에서 살펴볼 ‘천안관 도가니’, ‘전주관 도가니’ 등 대형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앞으로도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 및 보다 적극적인 신고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찰의 지적장애인 피해자 조사업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6)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장애인 NGO 및 지자체 합동으로 200여개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성폭행 등 각종 학대 사례 및 위생불량 사례 등을 발견, 형사고발(4건), 시설 폐쇄(14건),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조사(6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도참고자료, 2011. 12. 9.)

IV. 한국경찰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체계

1.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현재 경찰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성폭력 수사를 지방청 여청기능 소속의 성폭력 특별수사대 및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전담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전체적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수사를 관장하며,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진술조사 및 각종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가.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2013년 2월,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던 ‘여성·아동보호 1319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133명의 인원을 새로 충원하여 총 208명의 경찰관을 전국 16개 지방청에 성폭력 전담 수사요원으로 배치하였다.¹⁷⁾

<표 5>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현황 (2013년 3월 현재)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치 인원	208	23	17	12	14	11	10	10	16	10	10	10	11	11	10	11	12	10
기존 1319팀	75	6	4	5	5	5	6	3	6	4	3	5	4	4	5	5	3	2
충원인력	133	17	13	7	9	6	4	7	10	6	7	5	7	7	5	6	9	8

출처 : 경찰청, 2013

17) 경찰경력 3년 이상된 자 중 수사·여청·지역경찰 경력 합이 2년 이상이고 징계전력 없는 자중 적임자 우선 선발 및 수사경과자를 우선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반경과자도 선발 가능(경찰청, 내부자료, 2013).

구체적으로, 이들의 임무는 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¹⁸⁾ ② 광역 성범죄 등 사건 수사, ③ 장기 소재불명 등록대상자 추적수사이며, 현장·수사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되 피해자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여경 수사관들도 다수 포함되도록 하였다.¹⁹⁾

<표 6> 성폭력 특별수사대의 직위별 역할

구성원	역 할
성폭력 특별 수사대장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특별수사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 각 수사팀별 사건 배당 및 수사진행 상황 점검 ▶ 각 署 협조, 광역 성범죄 등 중요 성폭력 사건여부 확인 ※ 광역성범죄 등 발생시, 지휘보고를 통해 전담 (중요 성폭력 사건) 여부 결정
수사팀장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팀 배당(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 팀원별 수사진행 상황 점검
수사요원 (경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현장 진출하여 사건 인수 및 원스톱지원센터 연계 피해자 보호·지원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가해자 조사 등) ▶ 광역 성범죄 등 중요 성폭력 및 중요 학교·가정폭력 사건 수사 ▶ 2개월 이상 장기 소재불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추적 수사

출처 : 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교양자료, 2013

이 같은 전담부서 설치로 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 사건이 지방청 단위 여성청소년 기능의 경찰관들에 의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피해자 진술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²⁰⁾, 피해자 인권보호 증진, 수사 전문성 축적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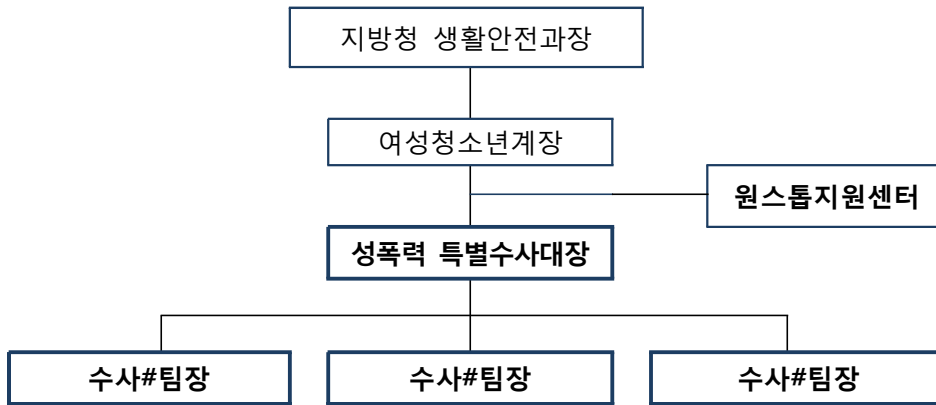
18) 13세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특별수사대가 전담하되, 강간살인·치사, 강도강간은 예외적으로 형사 기능에서 처리(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교양자료, 2013).

19) 경찰청, 내부자료, 2013.

20)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원스톱지원센터 경찰관들은 모두 여성청소년 기능 소속으로 동일한 상사의 지휘를 받는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그림 1>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조직 및 지휘체계도



출처 : 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교양자료, 2013 21)

한편, 전국의 경찰서에도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여청기능에 곧 설치될 예정인데, 2013년 294명, 2014년 293명, 2015년 292명 등 총 879명이 증원되어 경찰서관내의 일반 성폭력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²²⁾ 이로써 기존에 피해자 조사는 여청에서, 가해자 조사는 형사에서 하는 이원화된 성폭력 수사체계가 여청기능으로 일원화되면서 성폭력 수사 전문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 사건은 전과 같이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관된 업무 수행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성 축적 등의 면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21) 지방청별 인력을 고려, 수개 팀(경위 팀장 / 3인 이상) 또는 근무조로 구성하여 운영

22) 단, 강력사건인 강산살인(미수 포함)·치사 및 강도강간 사건은 지역 형사가 수사하고 피해자 조사·보호·지원은 전담수사팀이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경찰청, 내부자료, 2013).

나. 원스톱지원센터²³⁾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수사·상담·의료·법률 등의 통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2005년 8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경찰병원에 최초 설치하였으며,²⁴⁾ 2013년 9월 현재 전국 24개 병원 및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장애인 성폭력 수사에 있어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연계하여 경찰의 모든 장애인 및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²⁵⁾ 특히,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조사는 원스톱지원센터 여경에 의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확보가 곤란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이후의 가해자 조사 등 전체 수사의 성패 및 향후 재판 결과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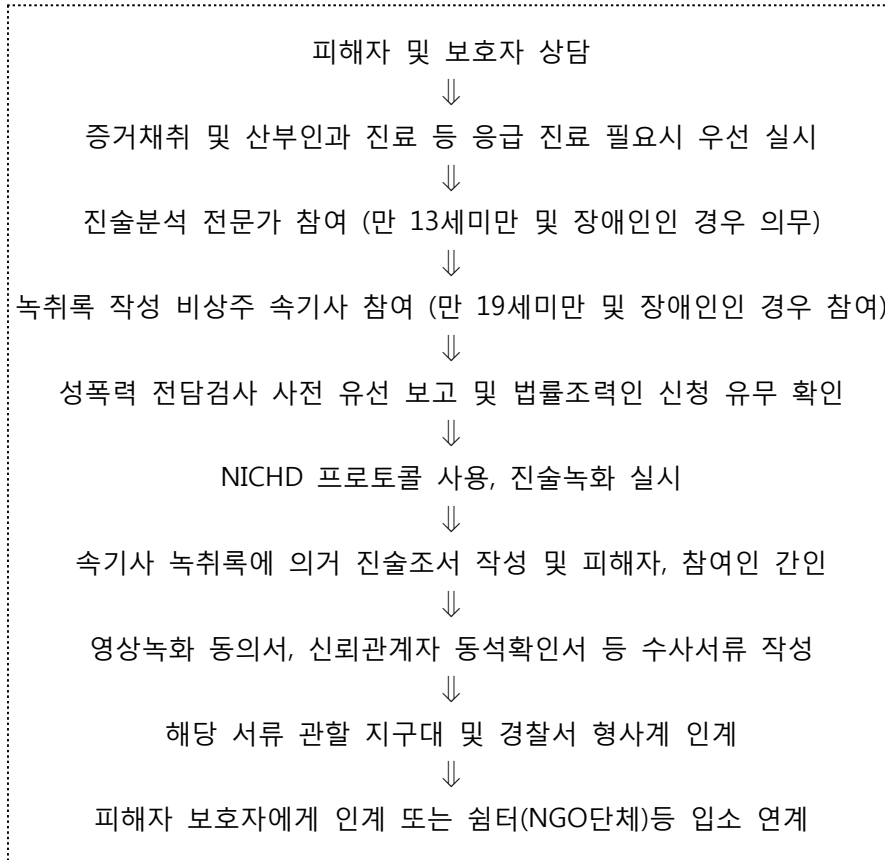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및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23) 현재 여성가족부 및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서는 경찰과 달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또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라고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향후 센터 명칭은 ‘원스톱지원센터’로 통일하기로 잠정적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조현일, “검거 일변도 성범죄 대응 사후관리로 변화 - 경찰, 유관기관 협력 관리체계 확대”, 세계일보, 2013.

24) 2003년 5월, 성폭력 피해 진료 및 수사지원 지연으로 3일간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하는 사건이 발생, 최초로 원스톱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공론화 되었다(여성가족부, 2013년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7쪽).

25) 경찰청, 성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2013, 30쪽.

<표 7> 장애인 및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 처리절차



출처 :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사건 처리절차 및 조치요령"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는 관련법률 및 검찰·경찰 지침 등에 의거,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술분석전문가, 속기사, 신뢰관계자, 전담검사, 사건 수사경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술분석 조사실에는 여성 경찰관, 신뢰관계인(성폭력특례법 제34조, 아동법 제28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성폭력특례법 제27조, 아동법 제30조)가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게 되며, 진술

분석 모니터실에는 진술분석전문가(성폭력특례법 제33조)²⁶⁾, 속기사(성폭력특례법 제29조, 아동법 제25조 관련 경찰 자체시행), 담당 형사, 보호자, 그리고 간혹 검사 등이 진술과정을 살펴보게 되며, 이를 합하면 최대 9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과 각종 규정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만큼 원스톱지원센터의 시설 및 근무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즉, 대부분의 원스톱센터는 이들을 수용할만한 충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조사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다는 것이 면접한 원스톱지원센터 근무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으며,²⁷⁾ 이로 인해 피해자를 배려한 편안한 조사환경 준비, 피해자와의 원만한 라포 형성 등에 있어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같이 복잡다단한 조사과정은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과 함께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경찰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2013년 12월 19일 시행될 “진술조력인 제도”²⁸⁾는

26) 진술분석 전문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13년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19쪽)

1. 진술녹화 전 경찰 상담사 등의 부모 면담 과정에 참여, 사건의 특징, 피해아동 또는 장애인의 상태 등 파악
 2. 진술녹화 전 경찰에게 아동 또는 장애인의 발달, 심리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조사 시기, 면담 유의사항 등 수사 방향 설정을 협의
 3. 진술녹화 시 참여하여 아동 또는 장애인의 태도 및 진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4. 진술녹화 종료 후 진술조사 과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사법기관 요청 시 서면으로 의견 제출 또는 직접 출석하여 법정 증언
- 27) 김예진, “밀려드는 성폭력 상담, 앓을 자리도 부족-원스톱센터 출범 8년, 사무실 찾아가보니”, 세계일보, 2013. 8. 20.

28) 진술조력인은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성폭력특례법 제36조, 제37조). 자격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관련 전문가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부여된다(성폭력특례법 제35조). 기존의 법률조력인이 아동 또는 장애인의 진술 특성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활동하는 반면, 진술조력인은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 및 재판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보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장혜진,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기존 제도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진술조력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어 기존 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 경찰의 피해자 조사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즉, 피해자 조사를 주도하는 중심이 경찰관에서 진술조력인으로 옮겨가면서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지 않게 되는 경찰수사관의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법률조력인과 진술조력인간 업무영역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진술분석전문가 제도를 관장하는 여가부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관장하는 법무부간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검찰은 최근 화상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지원센터 여성 경찰관의 진술조사를 검찰청사에서 원격지휘하는 “원격 화상지휘체계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경찰 및 관련단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²⁹⁾ 전면 도입 시 진술조사 경찰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위의 두 제도는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서의 경찰의 주도적 역할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제도들이 본격 시행될 경우 경찰은 진술조사 과정에서 허수아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피해자 조사 전반은 검사가 화상으로 지휘하고 피해자와의 소통은 진술조력인이 주도하게 된다면, 눈앞의 피해자에게 조사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사업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다. 경찰청 차원의 시급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³⁰⁾

역할 중복 안돼야”, 법률신문, 2012. 6. 8.)

29) 검찰은 검경 중복수사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자며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반면, 경찰은 직접 센터에 나와서 지휘를 해도 되므로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심리적 유대(라포)를 형성 중인 눈앞의 조사관 외에 다른 이가 다른 공간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검찰의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조현일, “검경 성범죄 원격 화상지휘 갈등 장기화”, 세계일보, 2013.8.29.)

30) 이에 대해 일부 원스톱센터 근무자는 경찰의 진술조사 실력이 다른 기관 및 관련 단체, 학

2. 피해자 진술조사

가. 지적 장애인 피해자 진술조사 기법

현재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모두에 대해 NICHD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진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¹⁾³²⁾ 따라서, 경찰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의 요체는 “NICHD 프로토콜을 이용한 원스톱센터 여성경찰관의 진술조사”라 할 것이다.

1) NICHD 프로토콜 소개

NICHD란 “미국 국립 아동건강 및 발달연구소”의 영문(the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이니셜이며, 이 기관에서 미국의 일선 사법절차 종사자들을 위해 개발한 피해 아동 조사기법이 “NICHD 프로토콜”이다. 이 조사기법은 “개방형 질문과 자유회상 기억 촉진을 통해 오염되지 않은, 사실적인 정보를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³³⁾ 장점을 가지며, 개발국인 미국 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다른 조사기법에 비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³⁴⁾ NICHD 프로토콜은 아동 인지 및 발달적 특징에 대한 학문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일선 수사관들이 프로토콜, 즉 대본을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각본화된 형태(partially scripted

계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초래된 결과가 아니겠냐며 경찰의 자성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31) 경찰청, 성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2013.

32) 여성가족부 지원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의 성폭력 업무 매뉴얼에도 “아동·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NICHD 프로토콜을 활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매뉴얼, 2012. 12, 312쪽).

33) 위의 책, 40쪽.

34) 조은경 외, 성폭력피해아동 면담 및 조사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2010. (배현, “NICHD 프로토콜 소개”,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2011. 5. 17.), 재인용

procedure)여서 일선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하며, 이후 조사 과정 전체를 시나리오 형태로 구조화(fully structured investigating protocol)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³⁵⁾

현재 경찰청이 각종 매뉴얼 및 지침을 통해 일선에 권고하고 있는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 프로토콜은 영문 NICHD 프로토콜을 번역해 놓은 것이다.³⁶⁾³⁷⁾ 프로토콜은 총 14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다양한 예시가 각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응답에 따라 앞이나 뒤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등 유연하게 조직되어 있어 조사자가 상황에 따라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³⁸⁾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의 관련 매뉴얼에 제시되고 있는 NICHD 면담 절차 및 그에 따른 조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35) M. E. Lamb et al., *Tell Me What Happened*(Chichester, UK and Hoboken, NJ: Wiley), Chapter 4. / 이형근 역, “아동 등 취약자 면담 프로토콜 NICHD에 대한 이해”,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2013. 1. 29, 1쪽.

36) 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교양자료, 2013, 54-68쪽.

37)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위의 책, 336-345쪽.

38) M. E. Lamb et al. / 이형근 역, 앞의 글, 17쪽.

<표 8> 경찰의 아동 및 장애인 면담조사 프로토콜(NICHD)

1.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관 및 주변 환경 설명 ▶ 규칙 소개 (진실만을 말하기,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은 부분 솔직하게 말하기 등)
2. 라포 형성 및 사전 진술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만들기 ▶ 사건과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주제를 통해 개방형 질문에 답하는 훈련하기
3. 사건 관련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회상 유도 ▶ 단서제시 진술권유 ▶ 개방형 촉진 및 진술권유
4. 휴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요약하기 ▶ 후속 질문 준비하기
5. 후속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점화된 질문으로 앞서 개방형 촉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질문하기 ▶ 초점화된 질문 이후에는 개방형 질문 사용
6. 종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수사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 아동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

<표 9> NICHD 진술조사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② 가급적 쉽고 짧은 단어, 문장으로 ③ 일반적인 사항에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④ 비유,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⑤ 대명사보다는 직접 지칭 ⑥ 아동의 어휘와 문장으로 질문 ⑦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 ⑧ 평가적 언급에 대해서는 원자료를 확인

출처 : 경찰청, 성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2013, 40쪽 /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매뉴얼, 2012. 12, 281쪽

2) NICHD 프로토콜 교육 현황

현재 원칙적으로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특별수사대 등 모든 성폭력 전담 부서의 경찰관들은 배치되기 전 NICHD 조사기법을 교육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경찰수사연수원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경찰청의 관련 교육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2013년도 NICHD 관련 교육 현황

명칭	명칭	대상 및 인원	교육 기관	교육기간 / 총 회차	NICHD 관련시간 / 총시간	NICHD 관련 교육 내용
전문교육	아동장애인 성폭력수사	성폭력 전담수사관 (경감이하) 320명	수사 연수원	1주/8회	16/35	취약자 면담기법 4시간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실습 12시간
	성폭력수사 전문	성폭력 전담수사관 (경정이하) 80명	수사 연수원	2주/2회	31/70	취약자 조사기법 4시간 심화 실습 27시간
배치 전 의무교육	성폭력 특별수사대 특별교육	특별수사대원 203명	수사 연수원/국고수	1주/1회	2/35	피해자 조사기법 2시간
	성폭력 전담수사팀 특별교육	전담수사팀원 294명	경대/교육원	3일/1회	2/21	피해자 조사기법 2시간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2013

위의 표에서 보듯 2013년의 경우 한 해에만 약 900여명의 성폭력 전담수사관에게 NICHD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경찰관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특별수사대 및 전담수사팀에게 실시한 배치 전 교육에서 NICHD 관련은 단 2시간의 이론

수업뿐이어서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시된다. 수사연수원의 두 전문교육과정들도 비교적 실습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 일견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 및 일반 피해자 조사기법의 실습과 병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장애인들만을 위한 NICHD 프로토콜 활용 교육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짧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아동의 진술특성 등 다양한 학문적 성과들을 집약해 놓은 전문 조사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최초 교육 이후에도 전담조사관들에 대해 심화 교육을 재차 실시해 조사기법을 능숙히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동시에, 활용 실력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꾸준히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3) NICHD 프로토콜 사용 현황 및 한계

NICHD의 실제 활용도를 윈스톱센터 근무자들에게 질문해본 결과, 대부분이 아동 피해자 조사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김현정·조소연(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인데,³⁹⁾ 이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NICHD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77%가 실제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⁴⁰⁾ 또한, NICHD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주변 정보가 많아지고, 추가 피해 등의 진술이 풍부해지며, 선택형·폐쇄형 질문의 사용이 줄어들어 등 긍정적인 활용 결과를 얻었다고 답변하였다.⁴¹⁾

하지만, 아동이 아니라 지적장애인에게 NICHD 프로토콜을 적용할 경

39) 이들은 2011년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17개 윈스톱지원센터 근무 경찰관 68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조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52개였다(김현정·조소연, 해외면담기법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 12.).

40) 위의 책, 15쪽.

41) 일부 피면담자는 “경찰관의 틀에 박힌 사고를 썼다”며 높게 평가했다(위의 책, 19쪽).

우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즉, 지적장애인들의 지적능력 및 적응능력이 천차만별이어서 자발적으로 진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상적 아동의 인지능력에 맞춰 개발된 NICHD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선의 호소는 위에 인용한 김현정·조소연(2011)의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되는데, 이들은 윈스톱지원센터 경찰관들이 지적장애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진술로 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이 거짓 말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사실과 분간할 수 있을지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⁴²⁾

본질적으로 NICHD 프로토콜은 아동의 진술특성 및 인지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지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⁴³⁾ 즉,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능은 5세이나, 몸은 성인이며, 사회경험 및 적응력은 10세 이상인 모습을 동시에 보일 수 있으며,⁴⁴⁾ 앞의 <표2>에서 보았듯 부정적 자아개념, 의존적 경향, 말과 언어의 지체, 고립과 반복된 거부의 경험 등 그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아동피해자와는 진술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NICHD가 개발된 미국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증언 능력과 이들에 대한 면담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가 아동 피해자에 비할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⁵⁾ 여기에, NICHD 등 아동 피해자 조사용으로 만들어진 조사 기법들이 지적 장애인에게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42) 위의 책, 18-19쪽.

43) NICHD 프로토콜에 대해 공동 개발자 중 한 명인 Yale Orbach는 “목격자로서의 아동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적화된 조사 기법”이라고 하였다(Yael Orbach,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진술조사 - 전략과 실제”,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 11. 28, 33쪽).

44) Jannifer Anderson·Rachel T. Heath, “Forensic Interviews of Children Who Have Development Disabilities-Part 2 of 2”,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Vol. 19, Number 2(2006), p. 2.

45) Yael Orbach, 앞의 책, 87쪽.

연구도 아직 부족하다.⁴⁶⁾ 그나마, 아동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피해자의 면담조사에서도 개방형 질문이 초점형 질문보다 적절하며, 지지적인 분위기 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⁴⁷⁾

따라서 현재 경찰청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NICHD 프로토콜을 “취약자 면담기법” 또는 “피해자 조사기법”이라고 통칭하면서 이를 장애인에게도 일괄 사용토록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NICHD의 아동 피해자에 대한 높은 효과성 및 신뢰도와는 별도로,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면담조사시 사용되는 바람직한 또는 부적절한 질문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46) 위의 책, 91쪽. NICHD의 공동 개발자 중 하나인 Yale Orbach의 내한 워크숍에 참석했던 어느 경찰관에 따르면, 많은 참석자들이 장애인용 프로토콜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그의 대답은 “지금 연구 중이며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뿐이었다고 한다.

47) 위의 책, 91쪽.

<표 11> 면담조사시 사용되는 질문 유형들

명 칭		내 용
바람직한 질문 유형	개방형 질문	가장 좋은 질문유형으로, 피해자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모두 말하도록 하는 것. 피해자는 스스로 정보의 종류나 양을 조절 가능하며 조사관이 자신의 관점이나 지식을 강요할 위험이 낮다. (예)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얘기해 주겠니?
	단서제시 진술권유	피해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는 것. 경험한 사건의 구조화된 회상을 위해 피해자가 이미 언급한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질문임. 피해자가 과거 경험한 일에 대한 재구성 능력 및 이야기의 양을 증가시킴. 또 피해자의 회상 동안 조사관에 의해 진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함 (예) 이전에 그 사람이 너의 쉬야를 만졌다고 했잖아.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겠니?
	초점형 질문	위의 두 유형으로도 특정정보가 얻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 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면서 조사관이 면담 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동적이 되고 집중력이 감소되어 정보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음. 따라서 초점질문 시에도 반드시 피해자가 언급한 진술을 바탕으로 함 (예) 그 사람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무슨 색 바지를 입고 있었나요? / 몇 시에 그 일이 일어났나요?
부적절한 질문 유형	선택형 질문	몇 가지 대안 중에서 답을 찾게 하는 방식. 피해자가 생각하는 정확한 선택지가 없는 경우에도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반응을 얻을 수 없음. 특히, 아동 등 피암시성이 강한 대상을 경우 주어진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예) 그 아저씨가 어떤 모자를 썼니? 야구 모자 아니면 다른 모자?
	선다형 질문	한 번에 몇 가지 내9용을 동시에 물어보는 질문. 이 경우 질문을 받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답해야 할지 곤란해 함. 또한 조사관도 피해자의 답이 어떤 질문에 의한 것인지 혼동 가능. (예) 어제 만남 그 사람 어땠어? 키가 컸어? 멋있었어? 나이는?
	유도 질문	중립적이지 않고 그 내용이나 형식이 피해자에게 답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거나 조사관의 관점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질문. (예) 그가 집에 왔을 당시 얼마나 흥분한 상태였나요? / 가해자가 나타나서 무서웠을 텐데 왜 소리치지 않았니?

출처: 여성이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매뉴얼 2012.12, 282-283쪽

V. 최근의 4대 도가니 사건 분석

이번에는 광주 도가니 사건부터 최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요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세 건 등, 총 4건의 도가니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실제 수사 모습은 어떠했으며, 최근의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다.⁴⁸⁾

1. 광주 인화학원 사건 (도가니 사건)

가. 사건 개요

2011년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로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 모았던 사건이나, 이미 2006년에 1차 수사를 통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장애학생 8명 이상⁴⁹⁾을 상습 성폭행했던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시들어진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가 다시 재단에 복직하고, 사건을 외부에 최초 제보한 보육사는 해임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하

48) 도가니의 사전적 뜻은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혹은 ‘홍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이나, 영화 도가니의 황동혁 감독에 따르면 도가니는 ‘분노의 도가니’ 할 때의 그것을 뜻한다고 했으며, 원작자 공지영 작가도 영화 속 무진의 자애학원이라는 곳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태연하게 일어나는 ‘광란의 도가니’라는 의미로 소설 제목을 도가니라고 했다고 한다. 영화에서도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주인공 서유진이 “이 무슨 광란의 도가니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49) 청각장애만을 가진 피해자도 있었지만, 지적장애도 함께 가진 피해자도 3명 섞여 있었다 (송화선, “성폭력 피해자 최소 30명 드러나지 않은 사건 여전히 많다-도가니 피해자 상담치료하는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 신동아, 2011. 12, 627호).

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6월 본 사건을 기초로 한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발표되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2011년 9월 개봉된 동명의 영화 ‘도가니’⁵⁰⁾는 소설을 능가하는 폭발적인 반향을 전국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영화는 460만 명이 관람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였으며,⁵¹⁾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우월적 관리자의 인면수심, 무력한 사법체계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경찰청은 영화 개봉 1주일 만인 2011년 9월 29일,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광주경찰청은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1차 수사에서는 입증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성폭행 가해 교직원(전 행정실장) 한 명을 구속시키는 등 총 13명을 형사입건하였다. 2012년 2월, 인화학교 법인은 재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비위사실들로 인해 법인 취소 및 폐교되었으며, 2013년 4월 대법원은 구속됐던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⁵²⁾

나. 사건의 특징

도가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 여학생 및 목격자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1차 수사에서는 입증할 수 없었던 가해자(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⁵³⁾ 피해 여학생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3급, 지능지수 55)를 동시에 가진 복합 장애인이었는데,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시점은 2004년이었으나 실제 사

50) 감독 황동혁, 주연 공유·정유미, 제작 삼거리픽처스, 배급 CJ엔터테인먼트

51) 영화진흥위원회, “역대 박스오피스”, www.kobis.or.kr/kobis/business/stat/boxs/findFormerBoxOfficeList.do (2013. 8. 29 검색)

52) 연합뉴스,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종합)”, 2013. 4. 25

53) 영화에서도 주요장면으로 연출된 피해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말한다.

건을 목격했던 동료 학생의 진술⁵⁴⁾ 및 진료 기록, 학교 출결 기록,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 피해 시점은 2005년이었던 것으로 특정되었다. 결국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⁵⁾ 반면 끈에 묶여 특정 피의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었는데, 이는 지적장애인이더라도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믿을만한 진술을 할 능력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부분이다.⁵⁶⁾⁵⁷⁾ 이 같은 사실들은 도가니 사건 조사경찰관의 답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사관들이 피해자가 진술한 일시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중략)...오히려 피해자가 기억하는 일시를 아예 무시하고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피해사실 자체에 집중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들을 찾으려 했던 것이 수사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강간치상죄를 가해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는데, 이미 범행 이후 장시간(6년)이 흘러 이를 밝히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외부의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료를 의뢰,⁵⁸⁾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54) 당시 학생이었던 목격자는 피의자로부터 목격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며 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입고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목격자가 자살 시도 상처를 치료한 병원 진료기록이 피의자의 범행시기의 특징에 큰 도움이 되었다(광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1).

5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 박재섭은 “환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과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일자, 시간 등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광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56)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 Forensic Interview-Techniques for Interviewing Victims with Communication and/or Cognitive Disabilities Trainer’s Guide, 2011. 7, p 7.

57) Yael Orbach,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진술조사 - 전략과 실제”,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 11. 28, 89쪽.

58) 서울 영등 세브란스병원의 임상심리전문가 신의진 박사(탐원 박재섭 박사)에게 진료 및 입

자에게 ‘심각한 성폭행 트라우마’가 발생하였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진단을 확보하였으며⁵⁹⁾, 이는 피해자의 상해 입증 및 강간치상죄 의율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피해자들의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해 신의진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번 심리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이 드러났어요. 한 피해자는 남자를 그려보라는 주문에 바지 앞쪽 지퍼를 과장될 만큼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피해자도 부리부리하게 큰 눈부터 그리거나, 손을 아예 그리지 않는 등 자신이 겪은 사건을 연상시키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남자를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언어 검사에서 거의 모든 단어를 성폭력과 연결 지었습니다. ‘경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물으면 ‘성폭행을 당해서 경멸당한다’라고 대답하는 식입니다.”⁶⁰⁾

도가니 사건 수사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지휘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대규모 전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영화가 개봉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광주지방경찰청(당시 청장 치안감 이금형)은 지방청 수사과를 중심으로 21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다. 특별수사팀은 2011년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인화학원 교직원들의 성폭행 및 법인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구속 1명(성폭력), 불구속 12명(성폭력 1, 법인비리 9, 폭력 2), 기관통보

원치료를 요청하였다.

5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의진 교수는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범 불안장애로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약물 치료 및 수화 통역사를 동반한 정신과적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광주지방경찰청, 위의 글).

60) 송화신, “성폭력 피해자 최소 30명, 드러나지 않은 사건 여전히 많다-도가니 피해자 상담 치료하는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 신동아, 2011. 12, 627호

7명, 불기소 6명, 내사종결 14명 등의 수사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각종 법인비리를 밝혀내 인화학교를 폐교조치 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 같은 지휘관의 각별한 관심 및 지방청 전담수사 체제로 인해 담당 수사관은 성폭력 사건의 진실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수사관들의 열의와 더해져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법적 처벌이라는 성공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⁶¹⁾

2. 천안 인애학교 사건 (천안판 도가니)

가. 사건 개요

천안의 특수학교인 인애학교의 지적장애 여학생 다수가 학교의 목공실습교사에게 목공실 및 기숙사 등에서 2010년을 전후로 수년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건으로, 2011년 12월 언론의 보도와 함께 도가니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의 발단은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 NGO에 의한 특수학교들의 인권실태 합동 지도점검이었는데,⁶²⁾ 천안인애학교 기숙사 여학생들을 개별 상담하던 성폭력상담소 직원이 한 학생에게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며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다른 학생과의 상담 및 목격자 등의 확인으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는데, 피해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천안판 도가니 시민대책

61) 트라우마로 인해 진술 및 수사협조를 꺼리던 목격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담당 수사관은 이 목격자와 무려 1,400여건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 위의 글).

62)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도참고자료, 2011. 12. 9.

위'는 최대 15명의 피해자가 최장 4년간 성폭행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⁶³⁾

하지만 실제 공소제기는 피해일시 및 피해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는 7명의 피해자에 대한 다음 표의 혐의사실 11건만으로 이루어졌는데,⁶⁴⁾ 이에 대해 1심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사의 구형보다도 2년 높은 징역 20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⁶⁵⁾ 현재 피의자는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63) 노정금, “천안판 도가니 시민대책위, 법원에 탄원서 제출 - 엄중처벌 할 것”, 일요주간, 2012. 8. 23.

64)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지적장애 1, 2급의 중증 지체아동 6명을 6회 성폭행 및 5회 강제추행하고 범죄현장을 목격한 장애학생(3급)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65)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도 자연스러워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가 인정된다.”(뉴시스, “천안판 도가니 피고인 징역 20년 선고”, 2012. 9. 26.)

<표 12> 시간순에 의한 피의자의 범행일시(피해자 진술에 근거)

연번	범행 일시 및 내용
1	2010. 3. 오전 목공수업시간 에 영화를 보여주거나 목공작업을 도와주면서 ①피해자(지적장애 1급, 16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2회에 걸쳐 추행
2	2010. 5. 초순 오전 목공수업시간 에 ②피해자(지적장애 1급, 17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3	2010. 여름 오전 목공수업시간 에 영화를 보여주면서 ③피해자(지적장애 1급, 18세)를 무릎에 앉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
4	2010. 여름 오전 목공수업시간 에 영화를 보여주면서 ④피해자(지적장애 2급 및 언어장애, 17세)를 교실 뒤편에 눕혀 간음
5	위의 일시, 장소에서 ④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⑤피해자(지적장애 3급, 17세)를 쇠톱으로 협박
6	2010. 여름경 목공실 에서 ③피해자에게 청소를 시키겠다고 유인하여 바닥에 휴대용 매트를 펴고 그 위에 눕혀 간음
7	2010. 여름경 목공실 에서 ⑥피해자(지적장애 2급 및 정동장애, 17세)를 목공실 바닥 매트 위에 엮드리게 하여 간음
8	2011. 1.내지 2.경 목공수업시간 에 ⑦피해자(지적장애 2급, 17세)의 가슴을 만져 추행
9	2011. 5.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기능경진대회를 마친 ⑥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자신의 집 으로 데려가 안방 침대에 눕혀 간음
10	2011. 여름 오후경 목공실 에서 피해자 ⑦에게 청소를 시킨다며 불러내어 돗자리 위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져 추행
11	2011. 3.내지 10.경 취침시간에 여자기숙사 방 안에 몰래 들어가 ③피해자 바지를 벗기고 간음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2013

한편, 본건 외에 같은 피의자가 또 다른 학생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⁶⁶⁾로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등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동일 피의자에 대한 1심 결과들이 엇갈림에 따라 중형이 선고된 본건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⁶⁷⁾

66) 피의자가 2010년 10~11월 교실에서 피해 여학생이 수업 도중 자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67) 경향신문, “천안판 도가니 교사, 추가 기소사건 무죄”, 2013. 6. 13.

나. 사건의 특징

광주 도가니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 사건도 외부와 격리된 특수학교에서 벌어졌으며 가해자(피의자)는 교직원, 피해자는 다수의 여성 지적장애 학생들이었다. 역시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적장애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외부의 상담원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피해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다. 여기에, 동료 교사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기도 하였다.⁶⁸⁾

본 사건의 전체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의 1319팀이 전담하였으며,⁶⁹⁾ 피해자 조사는 충남원스톱지원센터 여성 경찰관들에 의해 진행되었다.⁷⁰⁾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1심의 판결만 보았을 때 이들의 수사는 피해사실 입증에 있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충남원스톱지원센터 근무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일시와 시간에 대한 고정된 틀로 비장애인에게 하듯이 논리적으로 풀려 해서 오류가 발생했었고...(중략)...그리고 장애인은 질문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재차 확인해서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중략)...(지적)장애인이 과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중략)...지적장애인의 진술특성에 맞추어 질문을 짧고 명료하게 하고, 이들이 말한 몇 가지 중요 단어 및 단서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고...(중략)...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1,2차 전문가 의견

68) 충남교육청은 성폭행 사실을 목인한 동료교사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노동신문, 앞의 글).

69) 현재 2013년 3월부터 전 지방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전에는 지방청 여청계의 ‘1319팀’이 성폭력 전담수사대의 역할을 하였다.

70) 충남원스톱지원센터의 여성경찰관 4명은 피해자 및 참고인으로 총 11명의 지적장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서 등이 실제 법정에서 판사의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준거 같고요...(중략)...변호사가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결국 재판장이 장애인, 즉 증인을 직접 심문함으로써 장애인의 진술 특성을 이해했어요.”

요컨대,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사 경찰관들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진술조사를 하고자 노력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반복하며 경험 및 전문성을 축적하며 보다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진술분석전문가의 긍정적 의견서로 재판에 반영되었으며, 결국 판사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쳐 피의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3. 전주 자립원 사건 (전주판 도가니)

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12월, 전북지역 장애인 단체 등 6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이루어진 대책위원회⁷¹⁾가 전북 전주의 대형 복지재단인 자립원에서 원생에 대한 상습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일부 언론이 이를 광주 및 천안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빗대어 ‘전주판 도가니’로 지칭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애초에 경찰수사는 이보다 앞선 2012년 7월 대책위가 관할 경찰관서인 전주덕진서에 피의자를 고발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피의자의 구체적 혐의는 1992년부터 2001년 사이 특수교사로 재직했던 재단 이사장의 처조카인 피의자가 당시 17살에서 25살이었던 장애여성 7명을 시

71) 정식 명칭은 “자립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내의 강당, 창고, 교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의자는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고교생 시절부터 피해 장애인들과 시설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피해 여성들은 평소 피의자를 ‘오빠’ 혹은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랐다.⁷²⁾

한편 사건의 발단은 이번에도 역시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2011.10.28 ~ 2011.12.3.)’였는데, 자립원 교사들이 실태조사 직후 자체적으로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중 일부가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것이다.⁷³⁾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자 7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등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으나,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진실게임’의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나.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역시 피해자는 장애인 시설의 원생이었으며, 모두 2·3급의 지적 장애인이었다. 피의자는 시설에서 함께 기거하며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했던 교직원이었으며, 피의자의 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혐의사실은 도가니 사건 이후의 일체 조사가 아니었으면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은 성폭행 피해 이후에도 여전히 피의자를 여전히 ‘오빠’나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르는 등 성폭행 피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현재 사건은 지방청 성폭력 전담팀이 아닌 전주덕진서 수사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만 지방청 여성청소년 소속인 전북원스톱지

72) 박영준, “성폭행 당하고도 몰라...도가니는 진행 중/부실한 장애인 성교육”, 세계일보, 2012. 12. 24.

73) 전북일보, “조사받은 지적장애여성 7명 중 6명, 가해자 폭행 일관된 진술”, 2012. 12. 3.

원센터에서 이루어졌다.⁷⁴⁾ 고발 이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는 조사와 함께 피해자 및 피해사실이 계속해서 병합되었고,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조사를 위한 친밀감 형성에만 피해자 일인당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으며,⁷⁵⁾ 무엇보다도 피해사실 대부분이 발생하지 이미 10여 년이 지난 반면 피해자는 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피해 일시 특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 도가니 사건과 같이 목격자가 있기는 하나,⁷⁶⁾ 목격자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신빙성 있는 진술을 얻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윈스톱센터 경찰관의 답변이다.

“관련 교육은 다 받았고 아동 피해자 조사 경험도 있지만 지적장애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아니요 로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필대화도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중략)…자신의 기억과 남의 경험(진술)을 구분할 지도 모릅니다. (중략)…NICHD가 아동에겐 비교적 잘 맞지만, 지적장애인에게는 적용이 곤란한 것 같아요. 결국 개방형 질문을 시도하다가 직접형 또는 선택형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략)…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로 좁혀서 질문을 하는 건데 아예 말도 못하니 조사가 곤란합니다. (중략)…검찰에서는 사건이 이목을 끌다보니 공소제기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구요.”

결국 피해자의 진술 외에 성폭력 피해사실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피해 일시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차례 개정되어온 관련 법률 중 어느 법률로 피의자를 의율할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74) 센터 근무 경찰관 3명이 피해자로 생각되는 9명 중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7명에 대해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75) 박용근, “지적장애 여성 7명 성폭행, 전주관 도가니”, 경향신문, 2012. 12. 3

76) 광주사건에서 끈을 묶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 학생으로, 청각장애만 있고 지적장애는 없다.

4. 제주 영세민아파트 사건 (제주판 도가니)

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가장 최근인 금년 8월말 한 언론에 의해 단독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는데, 도심의 영세민 임대 아파트 단지(총 10동, 696세대)에 거주하는 다수의 지적 장애인들이 피해자였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이 발각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점, 입주자 대표 등 다수의 이웃이 가해자라는 점 등 여러 면에서 ‘도가니’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몇몇 언론에 의해 ‘제주판 도가니’로 보도되었다.⁷⁷⁾

경찰의 수사는 금년 7월말 경 관할서 형사가 영세민 아파트 단지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 조사결과 이 피해여성이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⁷⁸⁾ 입주자 대표로부터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3년에 걸쳐 6회의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수사 중 단지 내의 다른 지적 장애여성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가 속속 경찰에 입수된 것이다. 이에 지역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단지 내 모든 장애인(45세대 49명)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탐문한 결과, 청년회 부회장, 입주자회 간사 등 5명의 이웃 남성들이 또 다른 6명의 지적장애 여성들을 강간 및 강제추행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77) 한편,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언론사는 본 사건이 영화 ‘이끼’에서 마을 주민들이 나약한 한 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하는 설정과 매우 흡사하다며 영화 ‘이끼의 판박이’라고도 지칭하였다(장재혁, “장애여성 성폭행한 몫쓸 이웃들...영화 이끼 판박이”, 뉴시스, 2013. 9. 11.)

78) 수사팀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정상인인줄 알았으며 조사를 하면서 정상인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의사 진단결과 비교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두 명의 피의자에게 윤간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서로 다른 두 지적장애인 가정에서 모녀 및 자매가 모두 성폭행당하기도 하였다. 즉, 총 7명의 피해자(①~⑦)가 6명(A~F)의 이웃 주민에게 과거 수차례 성폭행 피해를 당했거나, 최근까지도 당해왔던 것이다.

<표 13> 경찰이 확인한 제주관 도가니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및 일시

피해자	장애 등급	나이	피의자(A~F) 및 피해 사실	피해 일시	피해 장소
①	3급	30세	A피의자에게 3회 성폭행 및 성추행 C피의자에게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12.6~'13.6 '13.3	피해자집 모텔 피의자 집
② (①의 모)	1급	67세	A피의자에게 2회 성폭행 B피의자에게 3회 성폭행	'12.2 '11.4	피의자 집 피의자 집
③	3급	61세	A피의자에게 1회 성폭행	'10.6	피의자 집
④	3급	32세	B피의자에게 1회 강제추행	'11.4	노래방
⑤ (⑥의 모)	3급	45세	D피의자에게 2회 강제추행	'12.7~'13.3	피해자 집
⑥	1급	19세	D피의자에게 3회 강제추행	'12.7~'13.3	피해자 집
⑦ (①의 언니)	2급	35세	E·F피의자에게 특수강간	수사 중 ⁷⁹⁾	피의자 집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2013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던 세 건의 도가니 사건들과 흡사한 점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성폭행 피해를 당했으나 관련단체 및 수사기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다. 또한 이웃 주민인 피의자들은 아무 거리

79) ⑦피해자가 생부를 모르는 아이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어 아이의 출산시기에서 역산하여 이 사건의 발생 일시를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검사결과 두 피의자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추가 수사 중이라 한다. 추측컨대, 피해자는 다른 남성에게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낌 없이 때와 장소, 나이를 불문하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였는데, 일부 피의자는 모녀와 자매를 모두 성폭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다른 도가니 사건들과 다른 점도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발생장소 및 피해대상으로, 특정 시설 안의 학생들(시설 장애인)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주거하는 성인 지적장애 여성들(재가 장애인)이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또한 노래방과 모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역 외(약 4km 상거)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었는데, 식사와 용돈으로 환심을 사면서 피해 장소로 유인하였다.⁸⁰⁾

본 사건의 수사는 첩보를 입수했던 제주동부서 강력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는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제주지방청에 장애인 성폭력을 전담하는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심리치료 NGO 연계 등 피해자 지원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발생사건이 아니라 형사에 의한 첩보 인지사건이었고, 첫 피해자가 일반인인줄 알고 일선서가 이미 수사를 착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후의 추가 첩보에 의한 여타 사건도 경찰서 강력팀이 맡게 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성폭력 수사는 지방청 여청기능의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전담한다는 본청 지침과는 어찌되었든 배치되는 결과이다.

피해자 진술조사는 NICHD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센터의 여성경찰관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조사를 담당했던 원스톱센터 경찰관에 따르면 피해 일시 특정 및 피해 내용 파악이 극히 곤란하였다 한다.

“그나마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들은 개방형 질문은 어렵더라도 선택형 질문이 가능하기도 한데, 1급 피해자들은 물어도 그냥 웃고 있거나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략)…그나마 NICHD에 따라 진행하면 라포

80) 역설적으로, ①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된 것은 피의자들이 약속한 용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가 이를 불평하고 다녔기 때문이며, 이 소문을 담당형사가 입수한 것이다.

형성까진 괜찮은데,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 들어가면 아예 말이 안 통합니다. (중략)…개방형 질문을 하다 초점형 질문을 해도 안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유도형 질문이나 선택형 질문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중략)…아예 피해사실에 대한 표현이 되지 않아서 해부학적 인형을 사용해서 피해사실을 인형으로 보여 달라고 하니 그나마 조금 파악이 되기도 했습니다.”⁸¹⁾

하지만 위의 피해사실 정리표에서 보듯 다행히 다수의 피의사실들이 비교적 세부적으로 일시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팀 형사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참고인 조사와 간접정황에 대한 수사를 벌여 결국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당형사는, 자신도 처음에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신반의하였는데 실제 수사를 해보니 결국 피해자들이 말이 다 맞는 것으로 드러나 놀랐다고 하였으며, 지적장애인들이 다소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여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는 지적장애인이자도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중요 사건에 대해 믿을만한 진술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⁸²⁾⁸³⁾

현재 윤간피의자 둘을 제외한 피의자 4명은 구속수사 및 송치되었으나 아쉽게도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며, 윤간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범행일시 특정을 위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81) 해부학적 인형은 피해자에게 무의식적인 암시를 줘 실제 경험한 사건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형을 통해 피해자가 비현실적인 진술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경찰청, 성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2013, 53쪽).

82)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 Forensic Interview-Techniques for Interviewing Victims with Communication and/or Cognitive Disabilities Trainer's Guide, 2011. 7, pp. 7.

83) Yael Orbach,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진술조사 - 전략과 실제”,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 11. 28, 89쪽.

5. 분석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4대 도가니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4> 최근 4대 도가니 사건 비교 및 정리

구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천안 인애학교 사건	전주 자림원 사건	제주 영세민 아파트 사건
수사 착수	1차 : 2005년 6월 2차 : 2011년 9월	2011년 12월	2012년 7월 (~현재)	2013년 7월말 (~현재)
착수 계기	1차 : 교직원 제보 2차 : 영화 도가니	도가니 직후의 전국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조사	도가니 직후의 전국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조사	담당형사의 첩보 입수
담당관서	1차 : 광주 남부서 2차 : 광주청 특별수사팀	충남청 생활안전과 아동여성보호 1319팀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피해자 조사·지원	1차 : 남부서 형사 2차 : 광주 원스톱센터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전북 원스톱지원센터	제주 원스톱지원센터
가해자 (피의자)	교직원 4 (교장, 행정실장, 생활 재활교사, 생활교사)	목공 실습교사 1	특수교사 1	아파트 이웃남성 6 (입주자대표, 청년회 부회장, 입주자감사 등)
피해 기간	2001년~2005년 (5년)	2010년~2011년 (2년)	1992년~2001년 (10년)	2010년~2013년 (3년)
피해 사실 (혐의 사실)	[1차] 여학생(청각장애 또는 청각+지적장애) 8명 성폭행 (최대 12명 추정) [2차] 여학생(청각+지적장애) 1명 성폭행 및 목격자 1명 협박	지적장애 여학생 6명 성폭행 및 강제추행, 목격자 1명 협박 (최대 15명 추정)	지적장애 여학생 7명 성폭행 및 강제추행 (최대 9명 추정)	단지 내 지적장애여성 7명 성폭행 및 성추행 (특수강간 1건)
피해 장소	화장실, 행정실 등	목공실, 기숙사	강당방, 창고, 교실 등	피의자 집 피해자 집 모텔 노래방 등
수사 및 재판 결과	[1차] 교장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 : 집행유예 생활재활교사 : 집행유예 생활교사 : 징역 6개월 [2차] 행정실장 : 징역 8년, 전자발찌·정보공개 10년 인화학교 : 각종 재단 비리 밝혀져 폐교 조치	2심 진행 중으로, 1심에서는 징역 20년, 전자발찌 10년, 정보공개 10년 선고	경찰 수사 중으로 곧 검찰 송치 예정 (13.9월 현재)	피의자 4 구속·송치, 특수강간 피의자 2 추가 법률검토 후 송치 예정 (13.9월 현재)

위의 표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최근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반복적·장기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기존 연구가 최근 도가니 사례들에서도 확인되었다. 위의 표와 같이 광주 사건은 5년간(2001~05), 천안 사건은 2년간(2010~11), 전주 사건은 10년간(1992~2001), 제주도 사건은 3년간(2010~2013)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폐쇄적 환경에서 생활하여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성의식 및 교육의 미비로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보호자 등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자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나아가 천안 인애학교 사건과 같이 보호시설의 교직원들이 범죄사실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사건의 경우도 장애인 시설은 아니었지만 아파트 단지로 피해자들의 생활환경이 제한되어 있기에 장애인 시설에서 단체로 거주했던 다른 사례들의 피해자들과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며,⁸⁴⁾ 주변인의 무관심과 피해자들의 피해인식 미비로 수차례의 성폭행을 당하고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제3자에 의한 뒤늦은 피해인지 및 수사 착수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성폭행 피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경우는 없었으며, 내부 제보자, 외부 기관의 실태점검

84) 황지성(2012)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 ‘제가 장애인’도 마찬가지 사회환경과 인식으로 인해 같은 방식의 고립과 배제를 경험한다. 가족 안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기대치, 교육, 노동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애는 ‘자격 없음’으로 환원되고, 전반적인 고립과 배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Vol. 26(2012), 269쪽)

등 제3자에 의해 뒤늦게 피해가 인지되면서 수사가 착수되었다.

실제로, 서울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12년 전체 상담건수(2,142건)를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는 313건이었으나 실제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사건은 76건(24.3%)에 불과하였으며, 상담의뢰인의 68%가 가족, 친인척, 교사 등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으며 정작 피해자 본인의 신고율은 32%에 불과하였다고 한다.⁸⁵⁾

결국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는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광주 및 전주 사건의 경우 피해 발생 후 10년 후에야 수사가 이루어지다보니 피의사실 특정 및 증거 확보에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제주 사건도 2002년에 발생한 윤간사건의 경우 너무 시간이 경과되어 피해일시 특정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다. 가해자(피의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 가해자는 모두 보호시설의 교사, 교직원, 이웃 주민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배출하는데 피해자들을 활용한 것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09년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59.3%가 친족, 애인, 이웃, 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지인으로 볼 수 있는 복지시설근무자, 종교인, 채팅상대자, 미과약 등의 ‘기타’도 32.1%나 차지하였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8.6%에 불과했으니, 지인 및 기타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무려 91.4%나 되는 것이다.⁸⁶⁾

반면 전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14.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인 및 기타에 의한 피해는 85.6%로 장애인

85) 브레이크뉴스, “지난해 서울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313명”, 2013. 4. 18.

86) 여성가족부, “2009년도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2009. 12.

성폭력에 비해 낮았다.⁸⁷⁾ 결국 일반성폭력에 비해 장애인 성폭력은 지인, 동료, 복지시설근무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2009년도 전체 및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유형별 현황

구분	계 (건)	친족 친인척 배우자	애인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 강사	직장동료 상사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	34,289	5,460	8,177	4,134	986	3,596	4,939	6,997
성폭력	100%	15.9	23.8	12.1	2.9	10.5	14.4	20.4
장애인	2,557	461	451	549	14	44	221	817
성폭력	100%	18.0	17.6	21.5	0.5	1.7	8.6	32.1

출처 : 여성가족부, 2009. 12.⁸⁸⁾

라. 다수의 피해자가 장소 불문하고 성폭력에 유린

피해 장애여성의 수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8명(최대 12명으로 추정⁸⁹⁾), 천안 인애학교 사건이 6명(최대 15명으로 추정⁹⁰⁾), 전주 자립원 사건이 7명(최대 9명으로 추정), 그리고 제주 영세민아파트 사건이 7명이었다. 합산하면 4가지 사건의 피해자가 총 28명, 평균 7명이나 된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시설 및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이었으며, 제한된 생활반경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 피해를 당

87) 위의 글.

88) 피해자 1인에 대한 다수 가해자를 모두 표기한 결과임.

89) 12명이라는 피해자수는 2005년 1차 수사 당시 PD수첩 등 언론에 의해 집계된 숫자이며, 2011년 11월 2차 수사시 피해자들을 상담치료한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위한 정밀 검사 결과, 피해자수가 당초 10여명이 아니라 최소 30여명에 이르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가해자에 대한 증언도 있다고 주장하였다(송화선, “성폭력 피해자 최소 30명 드러나지 않은 사건 여전히 많다-도가니 피해자 상담치료하는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 신동아, 2011. 12. 627호)

90) 노정금, “천안판 도가니 시민대책위, 법원에 탄원서 제출 - 엄중처벌 할 것”, 일요주간, 2012. 8. 23.

하였다. 수업 중인 교실은 물론 가장 안전하여야 할 취침시간 이후의 기숙사나 피해자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⁹¹⁾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사실상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으며,⁹²⁾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마. 가해자(피의자)의 강력한 부인 및 은폐 노력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사건 모두 다수의 피해자들이 장기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가해자(또는 피의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하지만, 광주, 천안, 전주 도가니 사건 가해자들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가해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모두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로 인해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여타의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해자의 심리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⁹³⁾

한편 가해자는 범행 은폐 및 신고 차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유린하였다. 즉, 성폭력 가해 이전 또는 이후에 피해자에게 용돈, 음식, 선물, 놀이 등으로 유인, 보상하면서 성폭력 사실을 성매매 및 연애로 위장하거나,⁹⁴⁾ 동료학생 등 목격자가 있을 때는 폭력 등 협박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도 하였다.⁹⁵⁾

91) 네 사건의 피해 장소들은 교실, 강당, 실습실, 기숙사, 창고, 행정실, 화장실, 피해자 집, 피의자 집, 모텔, 노래방 등 피해자의 생활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방실을 망라한다.

92) 제주도 사건도 입주자 대표, 입주자회 감사, 청년회 부회장 등 다수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피의자에 속해있다. 물론 피의자 중에는 직접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웃 주민들도 있었지만, 정상인이라는 자체가 이미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점한다 할 것이다.

93) Andrews와 Veronen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 피해의 위험이 더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잡혀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확신”을 꼽았다. (공미혜 외, 장애여성의 삶과 복지, 신정, 2007), 재인용.

94) 김성희 외, 앞의 책, 26쪽.

95) 광주 도가니 사건 가해자는 목격자에게 사이다병 및 몽둥이 등으로 마구 폭행하면서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으며, 천안 도가니 사건 가해자는 쇠파스를 이용해 목격자를 협박했다.

VI. 수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경찰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 현황과 최근의 4대 도가니 사건들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상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가. 뒤늦은 수사착수로 피해사실 등 입증 곤란

가장 큰 문제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 후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인지 및 신고 되어 경찰수사가 매우 늦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건 담당 수사관들은 피해자 진술조사를 통해 확보된 피의 사실에 대해 병원 진료기록, 현장조사, 학교 출결기록, 목격자 진술 등 정황증거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이미 수년이 지나 물리적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기억은 희미해져버린 후이기에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그나마 피해발생(2010~2011년) 직후 수사에 착수(2011년 12월)했던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경우 피해일시 특정 및 피해사실 입증 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으나, 사건 발생 수년 후에 인지된 전주 및 제주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수사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⁹⁶⁾

나. 현행 아동용 진술조사기법(NICHD) 지적장애인에 적용 곤란

면담에 참여했던 모든 경찰관들은 NICHD 프로토콜이 아동 피해자에 적합한 조사 방법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지적장애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도가니 사건에서 NICHD 프로토콜을 지적장애인에 적용해본 원스톱센터 경찰관들은 라포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져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피해자와 대화가 끊기고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지적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NICHD 프로토콜을 단지 지적장애인의 지적 능력이 아동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적장애인에게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동과 장애인은 전혀 별개라 할 것이며, 정책 입안 및 시행에서도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접근 및 해법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 비전담 부서의 장애인 성폭력 수사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는 지방청 여청기능의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원스톱지원센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전주와 제주 도가니 사건의 경우 고발 및 첩보로 인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선서 강력팀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고, 전문교육 이수 후 배치되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방

96) 전주 사건의 경우, 피해 기간 중간에 학교 자체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피해일시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더욱 혼재되어 나타났다고 한다.

청 전담수사대가 전담수사는커녕, 피해자 지원 업무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인력 및 조직 활용이 아니라 할 것이다.

아직 수사 중이며 보다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는 하겠지만,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의 두 사건들은 지방청 전담팀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졌던 광주와 천안 도가니 사건에 비해 수사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에서 기능간 업무조정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 광주청의 도가니 특별수사팀 운영은 지휘관의 각별한 관심과 전담수사체제의 활용으로 새로운 혐의점을 밝혀내고 학교를 폐교시키는 등 큰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 조사관의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경험 부족

지적장애인은 개인에 따라 그 장애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적 장애특성을 공식적 장애등급과 함께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지능이 낮다고 하여 어린이 취급을 해서도 안 되며, 진술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기억 능력과 회상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하여서도 안 된다. 이들의 경험은 그들의 기억을 효과적으로 인출시켜주는 적절한 단서나 질문이 있을 경우 신뢰 있게 진술되어 질 수 있으며, 이는 질문을 하는 조사관의 전문성과 경험에 좌우된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천안판 도가니의 경우도 조사관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진술조사를 시도하면서 보다 많은 피해사실이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조사관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의 진술특성이 아동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수사 시 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

수적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김현정·조소연(2011)의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데, 이들은 윈스톱센터 근무경찰관들에게 향후 가장 필요한 진술조사 관련 교육 내용과 순위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장애유형별 특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답해 장애인의 특성과 그에 따른 조사기법 교육에 대한 일선의 요구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었다.⁹⁷⁾

마. 열악한 근무여건 및 급변하는 조사 환경

최근의 4대 도가니 사건의 평균 피해자는 7명이었으며, 이들의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윈스톱센터의 1회 진술조사에는 최대 9명의 관계자가 동시에 참여 및 입회하게 된다. 이들은 경찰청, 검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장애인 단체 등 각기 다른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며, 비좁은 진술녹화 조사실 또는 모니터링룸에 들어 앉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 전반을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제는 최근 몇 년간 거듭 변경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진술조력인 제도 및 원격 화상지휘체계 시범사업 시행으로 장애인 진술조사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컨대, 이렇듯 복잡다단한 조사 환경은 조사 참여자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관련한 긴장, 새로운 제도에의 적응을 위한 시간 및 자원 소모, 관련 행정업무의 비대화 등 갖가지 업무 부담을 만들어내 윈스톱지원센터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에만 역량을 집중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 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기초통계 미흡

경찰청은 현재 장애유형별로는 성폭력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장애유형별 성폭력 발생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97) 김현정·조소연, 해외면담기법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 12, 16쪽.

기본적 토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상담 통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성폭력 발생현황을 추정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며, 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 및 수사기법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가. “도가니 사건化” 원천 차단 위한 선제적 경찰활동 전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해 드러난 경우에도 이미 수년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성폭력은 수사 및 처벌에 앞서 예방 및 조기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관련,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별로 지적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관련부처 등과의 협조 등으로 면밀히 파악해 DB화하고, 이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면 피해자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광주 도가니 사건 이후 시설장애인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은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제주 영세민 아파트 단지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지역의 재가 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기 점검은 상대적으로 미진해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지 등에 대한 관할경찰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첩보 입수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지적 장애인 맞춤형 진술조사 프로토콜 개발 필요

앞에서 지적하였듯, 현행 NICHD 프로토콜은 지적장애인 진술조사에

는 아동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진술특성에 근거하면서도 일선 조사관이 활용하기에도 수월한 지적장애인만을 위한 진술조사 프로토콜이 시급히 연구 및 개발되어야 한다. 즉, 지적장애인들의 지적능력이 아동과 비슷할지는 몰라도 사회경험 및 적응능력은 아동과 매우 다르며, 부정적 자아개념, 의존적 경향, 말과 언어의 지체, 고립과 반복된 거부의 경험 등 아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에 기반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각 도가니 사건의 조사 경찰관들로 본청에서 프로토콜 제작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거나, 전문가들에게 개발관련 외부용역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NICHD 프로토콜의 장점인 개방형 질문의 사용 및 지지적 조사 분위기 형성 등을 그대로 수용하되, 지적장애인의 불명확한 진술 및 무응답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구체적 질문형태 및 전략을 개발하여 조사관들이 이를 진술조사 전반에 걸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지방청 특별수사대가 전담수사 확행

모든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방청 특별수사대 및 원스톱지원센터에 의해 전담수사 되어야 한다는 경찰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첩보 입수, 고소고발 접수 등으로 수사부서가 이를 인지할 경우에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이들에 의해 수사되고 있다. 물론 성폭력 수사도 수사 업무이므로 인지사건을 수사부서가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본청 관련기능 사이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 및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으며, 언론 및 관련 NGO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 일선서 강력팀 차원에서 처리하기는 벅찬 사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① 관련 수사체계와 인력,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으며, ②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와 동일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유기적 수사에 보다 유리하며, ③ 장애인 단체와 평소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④ 일선서에 비해 대언론 관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지방청 공보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전담수사관의 관련 전문성 대폭 강화 필요

1) 전담수사관에 대한 심화교육 및 반복적인 평가 실시

원스톱지원센터 등 일선의 전담수사관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 조사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과 관심에 비해 경찰의 관련 전문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실해 보인다. 현재는 보다 많은 수의 경찰관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데 정책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 지방청에 이어 모든 경찰서에 전담기능이 설치되게 되면서 인적 저변은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양이 아닌 질의 차원에서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근무자와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집중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보다 깊은 차원의 진술조사 관련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고, 전문가 등에 의한 피드백 및 슈퍼비전을 상설화해야 한다.

2) 전담조사관간의 수사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 촉진

앞서 지적하였듯, 지적장애인은 공식적인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개별적인 장애특성에 따라 기억력 및 진술 수준이 다르다. 결국, 진술조사 경찰관은 많은 케이스를 접하면서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이를 진술조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습득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아직 지적장애인 성폭력은 대부분의 전담조사관에게 낯선 사건이며, 교대근무제로 인해 더욱 이러한 사건을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할을 떠나 전담조사관 간에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한다면 간접적이거나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 기법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룬 도가니 사건들의 수사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및 학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의 논의사항 및 결론은 책자 및 내부문서 등을 통해 전국의 관련 경찰관들에게 전파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본청 차원의 타율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방청 내지 원스톱지원센터 근무자들 간에 권역별로 비격식의 정례적 모임을 조직하도록 장려, 순번에 의해 서로의 수사경험 및 시사점을 발표하거나 관련 전문가와의 문답시간을 가지는 등 자율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3)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근무기간 보장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는 일반적인 수사능력 외에도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의 축적이 요구되는 전문 수사 분야의 하나이다. 결국 교육 및 연구로 꾸준히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조사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원스톱지원센터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미흡하고, 경험을 쌓기가 무섭게 정기인사에 맞추어 타부서로 전보되곤 한다. 따라서 전담조사관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사지침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타 부서 경찰관에 비해 같은 부서에 장기 근무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전담조사관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 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미달 시 전보조치 하는 등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담조사관 전체에 대한 정기인사 예외 조치가 곤란하다면, 일부 근무자에 대해서라도 잔류를 인정하여 새로운 근무자들의 멘토 및 선임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관련 전문가 전담조사관으로 특별채용 검토

인식을 전환하여, 여성 경찰관 등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고 경험을 축적시키는 등 조직 차원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대신, 민간에서 장애인 성폭력 관련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한 자원을 장애인 성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우선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의 전문성 및 위상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에서 이들이 이미 구축해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NGO 및 학계와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채용 시 최소 5년 등 적절한 기간 동안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특별수사대 등 관련부서에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면 한 부서에 특정 경찰관이 장기 복무한다는 조직내부의 인사 시비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은 사이버수사 전문가, 외국어구사 전문가, 무도전문가, 특공대 요원, 프로파일러 등을 특별채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성폭력 수사 역시 이러한 분야에 못지않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⁹⁸⁾ 하지만, 사이버, 외국어, 무도 등의 전문가는 특채자 외에도 조직 내에 다수 있고,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타 특채 요원의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현재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98) 김상훈, 경찰수사연수원, 2013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특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할 것이다.

마. 원스톱지원센터 진술조사 환경 개선 및 인력 충원

위에서 지적하였듯, 현재 최대 9명의 이해당사자가 좁은 진술조사실 및 모니터링룸에서 경찰의 진술녹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스톱지원센터 경찰관들은 본연의 진술조사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일부 참여자를 제한하는 것이겠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법적 근거 등으로 조사에 반드시 참여 및 입회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결국 예산 투입 및 여가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소한 장소 및 시설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1인 단독의 3교대(혹은 4교대) 근무에서 2인으로 구성된 한 개 팀이 3교대(혹은 4교대)하고 주간에 팀장 1명이 일근하는 체제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진술조사 준비, 현장 정리, 관련 행정 업무 등에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는 현재의 업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함이며, 이로써 보다 세밀한 사전 준비, 더 친밀한 라포 형성, 양질의 진술녹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

관련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복합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성폭력 사건을 집계할 수 있도록 발생사건 통계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스톱센터 내방 장애인에 대한 집계방식도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내방자에 대한 인적요소는 집계하지 않고 폭력별, 지원유형별 등 업무 실적만을 집계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상인, 아동, 장애인 등으로 내방자 유형을

구분하고 하위 카테고리로 성별, 장애유형, 시설/재가 장애인 여부 등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1. 요약

이상에서 경찰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경찰이 수사하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정확한 발생 현황은 관련 통계의 미비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중 약 70% 정도가 지적장애인 성폭력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현재 각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피의자 수사 등 전체 수사를 맡고,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진술조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장애인 성폭력 전담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동 피해자 진술조사기법인 NICHD 프로토콜을 도입하여 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조사에 이를 활용토록 교육 및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와 달리 지적장애인에 이를 사용할 경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이 일선 경찰관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드러났다.

최근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 및 경찰 수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최근 4대 도가니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제3자에 의한 뒤늦은 피해인지 및 수사 착수,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가해자(피의자), 무방비로 장소 불문하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다수의 피해자, 가해자(피의자)의 강력한 부인 및 은폐 노력 등이 최근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주요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상 문제점들도 드러났는데, 뒤늦은 수사착수로 인한 수사관의 피해사실 입증 곤란, 현행 아동용 진술조사기법(NICHD)의 지적장애인 적용시 한계, 비전담 부서인 일선서 강력팀에 의한 수사, 조사관의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경험 부족, 열악하고 급변하는 조사 환경으로 인한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 지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경찰의 관련 통계 미흡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먼저, 각 경찰관서별로 지적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하여 현재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조기 발견 및 피해 예방을 촉구하였다.

둘째, 지적 장애인 맞춤형 진술조사 프로토콜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선서 강력팀에 의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수사되는 것보다 지방청 특별수사대가 전담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존 경찰청 지침의 확고한 준수를 요구하였다.

넷째, 전담수사관의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수사관에 대한 심화교육 및 평가 반복, 전담조사관 사이의 수사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 촉진, 최소한의 근무기간 보장, 관련 민간 전문가의 특채 검토 등의 세부적 방안을 권고하였다.

다섯째, 원스톱지원센터의 열악한 조사 환경 개선 및 인력 보강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정확한 기초통계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였다.

2. 전망 및 한계

요컨대,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이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 수사에 있어 피해자 진술조사 및 피해사실 특정 등 최종 판결에 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향후 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경찰이 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면, 경찰의 과학적, 전문적 수사능력을 조직 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과립치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응징하는 정의로운 경찰상 구현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중국적으로는 이는 다시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및 조직 발전을 치안 인프라 확보로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 여건은 경찰에 그다지 호의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및 검찰의 진술녹화조사 원격 화상지휘 시범사업 착수는 아동·장애인 수사 시 경찰관 역할 대폭 축소 등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경찰은 위에 나열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시간 및 자원의 확보도 넉넉지 않아 보인다. 정책의 우선순위 변경 등 경찰청 차원의 시급한 대응 및 전문성 제고 등 일선 전담 수사관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의 도가니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최신의 사건 경향 및 수사 실태를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주 도가니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 판결 등 사건의 유무죄 및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경찰의 수사상황 및 관련 입장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공미혜 외, 장애여성의 삶과 복지, 신정, 2007
- 김성희 외, 장애유형별 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2.
- 김정혜 외, 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 여성성폭력상담소, 2012,
- 김현정·조소연, 해외면담기법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 12.
-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이근후 외 역, 하나의학사
- 박승희·신현기, 지적장애의 재개념화, 교육과학사, 2003.
-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매뉴얼, 2012. 12.
- 여성가족부, 2013년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 조은경 외, 성폭력피해아동 면담 및 조사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2010.

2. 논문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Vol. 26(2012).

3. 기타

-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사건 처리절차 및 조치요령.
- 경찰청, 내부자료, 2013.
- 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교양자료, 2013.
- 경찰청, 성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2013.
- 경향신문, “천안판 도가니 교사, 추가 기소사건 무죄”, 2013. 6. 13.
- 광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1.
- 김상훈, 경찰수사연수원, 2013.
- 김예진, “밀려드는 성폭력 상담, 앓을 자리도 부족-원스톱센터 출범 8년, 사무실 찾아가보니”, 세계일보, 2013. 8. 20.
- 노정금, “천안판 도가니 시민대책위, 법원에 탄원서 제출 - 엄중처벌 할 것”, 일요주간, 2012. 8. 23.
- 뉴시스, “천안판 도가니 피고인 징역 20년 선고”, 2012. 9. 26.
- 박영준, “성폭행 당하고도 몰라...도가니는 진행 중/부실한 장애인 성교육”, 세계일보, 2012. 12. 24.
- 박용근, “지적장애 여성 7명 성폭행, 전주판 도가니”, 경향신문, 2012. 12. 3
- 배현, “NICHD 프로토콜 소개”,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2011. 5. 17.
-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도참고자료, 2011. 12. 9.
- 브레이크뉴스, “지난해 서울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313명”, 2013. 4. 18.

서하나,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노출 심각”, 에이블뉴스, 2013. 8. 28.

송화선, “성폭력 피해자 최소 30명 드러나지 않은 사건 여전히 많다 - 도가니 피해자 상담치료하는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 신동아, 2011. 12, 627호

여성가족부, “2009년도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2009. 12.

연합뉴스,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종합)”, 2013. 4. 25

장재혁, “장애여들 성폭행한 몫쓸 이웃들...영화 이끼 판박이”, 뉴시스, 2013. 9. 11.

장혜진,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기존 제도와 역할 중복 안돼야”, 법률신문, 2012. 6. 8.

전북일보, “조사받은 지적장애여성 7명 중 6명, 가해자 폭행 일관된 진술”, 2012. 12. 3.

조현일, “검경 성범죄 원격 화상지휘 갈등 장기화”, 세계일보, 2013.8.29.

조현일, “검거 일변도 성범죄 대응 사후관리로 변화 - 경찰, 유관기관 협력 관리체계 확대”, 세계일보, 2013.10.21.

II. 외국문헌

1. 단행본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 Forensic Interview-Techniques for Interviewing Victims with Communication and/or Cognitive Disabilities Trainer's Guide, 2011. 7.

Yael Orbach,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진술조사 - 전략과 실제”,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 11. 28.

2. 논문

Jannifer Anderson·Rachel T. Heath, “Forensic Interviews of Children Who Have Development Disabilities-Part 2 of 2”,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Vol. 19, Number 2(2006).

M. E. Lamb et al., Tell Me What Happened(Chichester, UK and Hoboken, NJ: Wiley), Chapter 4. / 이형근 역, “아동 등 취약자 면담 프로토콜 NICHD에 대한 이해”,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2013. 1. 29.

Ⅲ. 기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이란?”,

http://seoulidd.or.kr/mentall/mentall_01.php (2013.8.28. 검색)

영화진흥위원회, “역대 박스오피스”,

www.kobis.or.kr/kobis/business/stat/boxs/findFormerBoxOfficeList.do (2013. 8. 29 검색)

책임연구보고서 2013-13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찰수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의 「도가니 사건」들을 중심으로 -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